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商標 拒絶 定

〈大法院 第3部 判決〉(1987.1.20)

事件番號 : 86 후 135

裁判長 : 박 우 등

關與法官 : 김형기·정기승·김달식

1. 出願人(上告人) : 진 우 경

2. 相對方(被上告人) : 特許廳長

3. 原審決 : 特許廳 1986. 8. 29字, 1985年 抗告審判(絶) 第655號 審決

4. 主 文 : 上告를 棄却한다. 上告費用은 出願人의 負擔으로 한다.

5. 理 由 :

上告理由를 본다.

原審決 이유에 의하면 特許廳 抗告審判所는 商標의 類似與否를 判斷함에 있어서는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에 사용되는 두개의 商標를 그 外觀, 칭호, 판념을 객관적, 이격적,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商品間에 誤認混同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判別하는 方法에 의할것이며, 商標 서로간 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文字가 類似하여 그 칭호나 판념에 있어서 混同하기 쉬운 경우에는 類似商標로 볼것이라고 전제한다(大法院 1984. 12. 26. 선고, 84후 70판결 참조) “동큐 왕”이라고 표기하여서 된 本願商標에 있어서 “동큐”부분과 “왕”이라는 부분이 상호 일련불가 분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本願商標는 전단부분에 의하여 “동큐”라고 인식되거나 후단 부분에 의하여 “왕”이라고 인식될 것이고 주식회사 동큐제과 라고 표기하여서 된 引用商標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식별력이 없는 것이며,

“제과”라는 文字부분에 있어서도 전과자등 과자류에 해당하는 引用商標에 있어서는 他商品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引用商標의 요부는 결국 “동큐”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本願商標가 “동큐”라고 인식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引用商標와 그 요부가 동일하고 兩商標가 다 같이 전과자, 아이스크림등 同種商品을 指定商品으로 하고 있어 本願商標는 商標法 第9條 1項 7號의 規定에 해당된다고 보고 같은 취지로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적법하다고 하여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때 위와 같은 原審決의 判斷은 정당하고 소론당 原判例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判例가 아니며, 그밖에 論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商標有無 判斷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論旨는 理由없다.

따라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費用은 敗訴者의 負擔으로 하기로 關與法官의 意見이 一致되어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